

## 2025년 8월 뉴스레터

### I. 신규 법령

1. 베트남 노동총연맹 결정 제 61/QĐ-TLĐ 호 (2025년 7월 29 일자):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조합비 납부율 인하에 관한 사항입니다

구분	납부 기준	신규 납부율	전 납부율	비고
(1) 국가예산에서 100%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업 단위	의무 사회보험납부 기준임금	0,5%	1%	
(2) 국영기업, 국가가 지배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	실수령 임금(사회보험, 건강보험, 실업보험, 개인소득세 공제 후)	0.5%, 최대 기본급의 10%	1%	노동조합 집행위원회가 결의와 서면으로 동의하고 기초 노동조합 내부 지출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 더 높은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.
(3) 비국영기업, 비공립단위, 외국조직, 대표사무소, 해외파견 베트남 노동자	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임금	0.5%, 최대 기본급의 10%	1%	
(4) 사회보험 납부 기준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기업	임의 산정	최소 기본급의 0.5%	최소 기본급의 1%	직업별 노동조합 및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자에게 적용한다.

노동조합비 면제 대상입니다:

- 노동조합원이 1 개월 이상 사회보험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→ 해당 기간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.
- 노동조합원이 1 개월 이상 실직·무소득 상태이거나 무급 휴직 중인 경우 → 해당 기간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.

2. 정부 시행령 제 228/2025/NĐ-CP 호 (2025년 8월 18 일자): 독립 감사 분야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.

#### 2.1 적용 범위 및 구조

- 본 시행령은 총 4 장, 44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- 행정 위반 행위, 제재 시효, 제재의 형태 및 수준, 위반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, 위반 기록 작성 권한 및 제재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## 2.2 적용 대상

- 독립 감사 분야에서 행정 위반 행위를 한 국내외 개인 및 조직에 적용됩니다.
- 제재 대상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감사 기업 및 외국 감사 기업의 베트남 내 지사.
  -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업, 내·외국 기업의 베트남 내 지점·대표사무소.
  - 외국 감사 기업.
  - 감사 직업단체 및 감사 교육기관.
  - 행정 위반 기록 작성 권한자, 행정 처벌 권한자, 그리고 관련 기관·조직·개인입니다.

## 2.3 제재 시효

- 제재 시효는 5 년입니다 (종전에는 시행령 제 41/2018/NĐ-CP 호에 따라 1 년이었음).
- 제재 시효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→ 권한 있는 자가 발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.
  - 위반 행위가 종료된 경우 →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.

## 2.4 제재 형태

- 주된 제재 형태는 경고 또는 벌금입니다.
- 최대 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개인: 10 억 동 (종전 5 천만 동).
  - 조직: 20 억 동 (종전 1 억 동).
- 위반의 성질·정도에 따라 부가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  -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용권을 1~24 개월 박탈합니다.
  - 감사 서비스 영업 허가증 사용권을 1~24 개월 박탈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킵니다.
  - 위반에 사용된 물품·수단을 몰수합니다.

## 2.5 시행일

- 본 시행령은 2025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됩니다.

## 3. 정부 시행령 제 230/2025/NĐ-CP 호 (2025 년 8 월 19 일자): 2024 년 토지법 제 157 조 제 2 항에 따른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감면 사유 규정입니다.

- 본 시행령은 2025 년 8 월 19 일부터 시행됩니다.
- 2025 년도 토지 임대료 감면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3.1 감면 수준

-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2025 년도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의 30%를 감면합니다.
-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토지에 관한 법적 서류가 있든 없든 2025 년도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.
  - 현재 토지를 사용 중이나 토지 서류가 법률에 따라 완비되지 않은 자.
- 감면 금액은 2025 년도 토지 임대료 고지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이전 연도 토지 임대료 체납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### 3.2 투자자의 책임

- 산업단지, 산업클러스터, 수출가공구역의 투자자는 감면받은 토지 임대료를 재임차 단위에 분배해야 하며, 감면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.
- 아직 재임차되지 않은 토지 면적에 대한 감면 금액은 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## 3.3 서류 및 절차

- 토지 임대료 감면 신청 서류: 시행령 제 230/2025/NĐ-CP 호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.
- 신청 기한: 2025 년 11 월 30 일까지입니다.

#### 4. 정부 시행령 제 219/2025/NĐ-CP 호 (2025 년 8 월 7 일자):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입니다.

- 본 시행령은 2025 년 8 월 7 일부터 시행됩니다.
-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#### 4.1 노동허가증 신청 서류 개정

- 외국인 노동 수요에 대한 사전 보고·설명 절차를 노동허가증 신청 서류 제출 절차에 통합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기업/단위는 두 번 제출할 필요 없이 하나의 서류로 처리합니다.

##### 4.2 서류 처리 기간

- 권한 있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완비한 날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.
  -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검토·승인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  - 승인·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,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작성하여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송부합니다.

##### 4.3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추가

- 다음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 중앙부처, 부속기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  - 금융.
  - 과학 및 기술.
  - 혁신.
  - 국가 디지털 전환.
  - 그 밖의 사회·경제 발전 우선 분야입니다.

## II. 세무기관의 지침 공문

### 1. 재정부-세무국 공문 제 2821/CT-CS 호 (2025 년 7 월 30 일자):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인적공제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.

#### 1.1 부양가족에 대한 납세자번호 부여

- 납세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할 경우, 세무기관은 부양가족에게 납세자번호를 부여합니다(이미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).
- 세무관리 시스템에서 납세자와 부양가족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, 해당 개인이 소득을 신고한 소득 지급 기관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.

#### 1.2 등록 및 증빙 서류

- 납세자는 부양가족 1 인당 인적공제가 적용되는 전 기간 동안 단 1 회만 등록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
#### 1.3 근무지 변경의 경우

- 현재 소득 지급 기관 간에는 정보가 연결·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. 따라서 납세자가 새로운 기관으로 전직할 경우, 새로운 기관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자료를 보유하지 않습니다.
- 따라서 납세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다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하며, 그래야 해당 과세연도에 인적공제를 즉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## 2. 2025년 8월 4일자 세무서 공문 번호 2915/CT-CS (출국 보류 관련 세무 정책)

### 2.1 출국 보류 대상

-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:
  -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.
  -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.
  - 출국하기 전의 외국인.
- 위 대상자가 기한이 지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국이 보류됩니다.
- 출국 후 납세자가 베트남에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, 체납액이나 체납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철저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.

### 2.2 체납 징수 독촉 조치

- 세무 당국은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.
  - 전화 연락.
  - 문자 및 이메일 발송.
  - 등록된 연락처 주소로 체납 세금 통지서 발송.
- 체납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회신하여 검토, 대조 및 자료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.

### 2.3 출국 보류 전 사전 검토

- 출국 보류가 적용되는 경우, 세무 당국은 출입국 관리 기관에 출국 보류 통보를 발송하기 전에 납세 의무를 면밀히 검토·대조하여 정확히 확인합니다.

## 3. 2025년 8월 6일자 세무서 공문 번호 2994/CT-CS (중증 질환 납세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) 중증 질환에 걸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개인소득세(PIT)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3.1 치료비 지원금 비과세 처리

- 근로자가 본인의 중증 질환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공제 한도는 증빙서류에 따른 실제 치료비 지출액이며, 보험금 등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### 3.2 납부할 개인소득세 감면

- 중증 질환자는 과세대상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액 감면은 과세연도별로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됩니다.
- 연간 감면 한도는 해당 연도의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본 정책은 중증 질환 치료비가 발생한 모든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.

### 3.3 인적공제 적용

-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계산 시 여전히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.
- 본인 공제: 연간 1억 3,200만 동.
- 부양가족 공제: 1인당 월 440만 동.
- 부양가족 수가 많을 경우 총 공제액은 그에 따라 증가합니다.

## 4. 2025년 8월 7일자 세무서 공문 번호 3005/CT-CS

### 4.1 감사원의 감사 경우

- 국가감사원은 납세자를 직접 감사하지 않고 세무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.
- 감사보고서에 납세자의 세무 의무와 관련된 권고사항이 포함된 경우, 국가감사원은 해당 권고사항이 기재된 발췌본을 납세자에게 송부하여 이행하도록 합니다.
- 세무관리기관은 국가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조직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.

#### 4.2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

- 납세자는 세무관리기관 및 국가감사원에 세무 의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이 요청에 근거하여 국가감사원이 주관하고 세무관리기관과 협조하여 납세자의 세무 의무를 정확하게 확정합니다.
- 국가감사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.

**5. 2025년 7월 30일자 국무총리 공문 제 124/CD-TTg 호 (비현금 결제 촉진에 관한 지시)**  
국무총리는 재정부가 주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현금 결제를 촉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.

##### 5.1 구체적인 임무

- 다음 활동에 대한 점검,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.
  - 국가예산 결제.
  - 세금 징수 및 납부.
  - 재화·용역의 거래 및 매매에서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 관련 법규 준수.
- 법적 근거: 부가가치세법 및 2025년 7월 1일자 시행된 2025/181/NĐ-CP 시행령입니다.

##### 5.2 위반 행위 처리

- 조직, 단위 및 개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합니다.
- 특히 세금을 회피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현금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처리합니다.

**6. 2025년 8월 7일자 세무국 공문 제 3012/CT-CS 호 (건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)**

##### 6.1 적용 사례

- 세금계산서 사용 중지 강제집행을 받고 있는 납세자.
-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다음 목적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제출한 경우입니다.
  - 근로자 임금 지급.
  - 생산경영 활동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출.

##### 6.2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

- 납세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의 최소 18%를 즉시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관련 규정: 2020/126/NĐ-CP 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 (d)목.
- 위 금액은 법정 순서에 따라 세금, 가산세, 과태료 납부에 충당됩니다.

##### 6.3 부동산 양도세 신고에 관한 사항

- 다음 규정에 따릅니다.
  - 시행령 제 2025/70/NĐ-CP 호의 제 1 조 제 10 항.
  - 시행령 제 2020/126/NĐ-CP 호의 제 11 조 제 1 항 (b)목.

**7. 2025년 8월 8일자 세무국 공문 제 3034/CT-CS 호 (세무신고서 보완 제출 관련 세제 정책)**

##### 7.1 2025년 1월 1일 이전

- 세무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·검사 후 세무 관련 결론이나 처리 결정을 이미 발행한 이후, 납세자가 세무신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입니다.  
→ 보완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공제·면제·감면 환급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무 불복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, 납세자가 임의로 보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.

## 7.2 2025년 1월 1일 이후

- 납세자는 세무신고서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보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. 단,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- 오류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세무신고서 법정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0년 이내일 것.
  - 다음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.
    - 세무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세무조사·검사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보완 신고하는 경우.
    - 오류가 세무조사·검사 결정서에 명시된 범위 및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.

## 8. 2025년 8월 13일자 세무국 공문 제 3138/CT-CS호 (세제 정책 관련)

### 8.1 수입관세 부과에 대하여

- 세무당국이 직접 수입관세를 결정·부과한 경우, 해당 수입관세는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
### 8.2 매입세액(부가가치세) 공제에 대하여

- 수입물품에 매입세액(부가가치세)이 발생한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제 요건(세금계산서, 납세 증빙서류, 비현금 결제 등)을 충족하면 해당 수입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## 9. 2025년 8월 13일자 세무국 공문 제 3145/CT-CS호 (세제 정책 관련)

### 9.1 적용 사례

- 지점과 영업소가 동일한 모회사에 속하는 종속 회계 단위인 경우입니다.
- 지점이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소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.
- 영업소가 지점으로부터 상품 및 자재를 인수하는 경우입니다.

### 9.2 규정

- 위와 같은 상품·자재의 이전은 매매 또는 처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.
- 따라서:
  - 지점은 자산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상품·자재 이전 명령서만 발급하면 됩니다.
  -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# 10. 2025년 8월 8일자 세무국 공문 제 3037/CT-CS호 (세금계산서 관련)

### 10.1 운송 서비스 사업에서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

-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:
  - 운송수단의 등록번호.
  - 운행 경로(출발지 - 도착지).

### 10.2 국제 운송

- 베트남은 도로, 해상, 항공, 복합운송 등 여러 국제조약 및 협정에 가입하였습니다.
- 목적은 법률의 조화를 이루고, 무역을 원활히 하며, 관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.
- 국제 운송 구간의 경우:
  - 만약 국제조약이나 협정에서 운송장 및 관련 정보(화물, 송하인, 수하인, 운송인 등)에 대하여 국내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,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·협정을 우선 적용합니다.

## 11. 2025년 8월 14일자 세무국 공문 제 3170/CT-CS호 (자원세 관련)

### 11.1 과세 대상 자원 산출량

- 채굴된 자원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생산·가공 과정을 거친 후 판매하는 경우 → 과세 산출량은 판매된 제품에서 자원 사용량 기준으로 환산한 채굴량으로 계산합니다.

- 판매 제품이 공업 제품인 경우 → 공업 제품 단위당 자원 사용량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가공 후 제품이 공업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 부처가 결정합니다.

#### 11.2 자원세 과세가격

- 과세가격은 채굴자가 판매한 자원 단위 제품의 판매가격(부가가치세 제외)입니다.
- 다만, 이 가격은 해당 성 인민위원회에서 고시한 과세가격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.  
→ 실제 판매가격이 성 인민위원회 규정보다 낮을 경우, 성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.

#### 12. 2025년 8월 15일자 다낭시 세무국 공문 제 584/DAN-QLDN3 호 (부가가치세 세율 관련)

- 다음과 같은 서비스: 회계감사, 세무자문, M&A 자문, 경영자문 등은,
  - 보세구역 내 기관에 직접 제공되고,
  - 서비스가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되며,
  - 서비스가 보세구역 내 기관의 수출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,
  - 다른 활동(비수출 활동)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→ 부가가치세 0% 세율을 적용받습니다.
- 다만, 서비스가 시행령 제 181/2025/ND-CP 호 제 17조 제 4항에서 규정한 0% 세율 적용 제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0%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

